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6월 1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무역구제정책팀 나기용 과장(044-203-5850),
최경신 사무관(5854), 이승준 사무관(5855)

# 자유무역협정(FTA)시대, 세계가 모여 반덤핑 등 보호무역조치를 논하다

## -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 개최 -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등 10개국 무역구제 기관과 WTO 대표 등 200여 명 참석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국가와 FTA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가 주관하는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14. 6. 18. (수)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의 조화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됨.

○ 포럼에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무역구제 분야의 국내외 대표인사, 학계, 업계 전문가,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함.

○ 특히, 딘 핑커르트(Dean Pinkert)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옌스(Jens Schap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국장, 쩌우 샤오 얀(Zhou Xiao Yan)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등을 비롯한 10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요한 휴먼(Johann Human) 세계무역기구(WTO) 국장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구제 분야의 해외 저명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포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 상무부 차관보, (EU) 집행위원회 [illegible] 국장,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 (터키) 경제부 부국장,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국장,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무역부 국내시장보호국 부국장, (WTO) 무역규범국 국장, Advisory Center on WTO Law(ACWL) 변호사

□ 올해 14번째를 맞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우리나라 주도해 전 세계 주요국의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 포럼으로,

○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 제도 운용 경험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역구제 제도 발전에 이바지해왔음.

○ 올해 참석한 국가들은 무역구제제도 운용 면에서도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53%를 차지해 포럼의 위상과 상징성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 최근 5년간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현황('09~'13, WTO): (전 세계) 755건, (참가국 10개국) 355건

□ 특히 올해부터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WTO가 후원하는 첫 번째 무역구제 기관 간 고위급 협의체로 위상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고,

* '14. 4.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칼 브라우너(Karl Brauner) WTO 사무차장과 무역위원회-WTO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양해서한을 교환

○ 내용과 수준 측면에서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 국제 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춰, 세계 교역시장에서의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자유무역 촉진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무역자유화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WTO와 각 나라의 무역구제 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포럼을 통해 세계 각 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논의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이 날 포럼 개최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부 김재홍 차관이 대신 읽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 국제 무역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것은 물론, 국가 간 장벽을 넘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며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세계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라고 말하고

○ 무역구제 제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통해 자유무역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의 핵심 인프라이며,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무역구제제도와 서울국제포럼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임을 강조함.

○ 또한,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앞으로 무역구제제도 발전과 국제무역 증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라고 밝힘.

□ 올해 포럼은 "WTO와 FTA 무역구제제도와의 조화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됨.

○ 기존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에서 양자 FTA 체결이 확대되고, 최근에는 TPP 등 다자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국제 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음.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이러한 환경에서 WTO 체제, 양자 FTA, 다자 FTA 등의 무역 규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규정간 상충의 가능성도 예상됨에 따라 다소 도전적인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 국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음.

□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장관(전 WTO 사무차장)이 진행한 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거대 경제권 FTA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됨.

○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변호사는 양자 또는 다자 간 FTA 체결 확대가 무역구제제도 또는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함.

- 최근 다자 FTA가 추구하는 역내자유화, 가치사슬의 구축이 진전되는 경우 FTA 참여국간 또는 FTA참여국과 비참여 국가 간 통상분쟁이 증가 가능성을 전망하며,

- 이러한 통상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FTA 참여국의 무역구제기관들은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 이외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통상분쟁에 대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FTA 체제에 맞는 통상정책에 관한 자문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두 번째 주제에서는 각 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과 최근 자국 내에서의 무역구제제도의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 Dean Pinkert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뿐만 아니라,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자국 산업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해 백악관, 의회 및 관련 업계에 제공하는 ITC의 적극적인 역할을 소개함.

- 아울러 세계 무역 이슈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IT 기술을 활용한 조사 기법과 문서 관리 방안을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함.

○ 박진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조사현황을 소개함.

- 또한, 국제적으로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FTA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확립을 위해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WTO 협정보다 강화된 무역구제 규정*(WTO Plus)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에 대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함.

* WTO 협정의 모호한 무역구제 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한 FTA 조항 (제로임 금지, 최소부과원칙,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 등)으로 EU, 한국 등 수출 위주의 국가에 유리

□ 이날 저녁에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과 만나, 해외에서 진행되는 반덤핑 조사 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직접 전달하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Business Dialogue)' 행사를 무역협회가 개최함.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에서는 해외 참석자와 기업, 로펌, 학계 등 국내 관계자들이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눔.

-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수입규제 건수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14. 6. 총146건): 반덤핑(111), 상계관세(4), 세이프가드(31)
* 참가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 중국(17), 미국(10), 터키(3), 인도네시아(5), 러시아(1), 브라질(9), EU(3), 멕시코(1), 호주(9)
·상계관세: 미국(4)
·세이프가드: 터키(7), 인도네시아(5), 러시아(3)

- 특히 포럼에는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케미칼, SK하이닉스 등 기업과 법무/회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함.

□ 홍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국제포럼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성장시켜 세계 무역질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힘.

* 행사 개회식 직후 사진 배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최경신 사무관((☎ 044-203-5854), 이승준 사무관(☎ 044-203-58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계획(안)

### 1. 행사개요

○ **(의의)** 全세계 무역구제기관간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및 통상마찰 사전 예방(무역위원회·WTO 공동주관)

○ **(일시・장소)** '14.6.18(수) 10:00~20:00, COEX 컨퍼런스룸 318호

○ **(참석자)**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순직 무역위원회 위원장, 국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200여명

**< 해외 참가기관 현황 >**

| | 소속 기관 | 성 명 | 직 급 |
|---|---|---|---|
| 1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Dean A. Pinkert | 위원 |
| 2 | **미국** 상무부 | Paul Piquado | 차관보 |
| 3 |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 Zhou Xiao Yan | 국장 |
| 4 | **EU** 집행위 통상총국 | Jens Schaps | 국장 |
| 5 |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 | Ernawati Soedjono | 위원장 |
| 6 |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 Marco C. Saraiva Fonseca | 국장 |
| 7 |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 Víctor Manuel Aguilar Pérez | 위원장 |
| 8 | **터키** 경제부 수입국 | Ahmet E. ÇETİNKAYIŞ | 부국장 |
| 9 | **WTO** 무역규범국 | Johann Human | 국장 |
| 10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국내시장보호국 | Andrey Zakharov | 부국장 |
| 11 | **호주** 반덤핑위원회 | Dale Seymour | 위원장 |
| 12 | Advisory Centre on WTO Law(ACWL) | Jan Bohanes | 변호사 |

### 2. 주요내용

○ **(포럼)** 'WTO체제와 FTA 무역구제제도의 조화와 미래'를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구성

* (세션1) 거대경제권 FTA와 무역구제제도, (세션2)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

○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해외 초청인사와 업종별협회, 학계, 로펌 등이 공통관심사를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애로를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3. 행사 세부일정

| Time | Program |
|---|---|
| 9:30~10:00 | **등록** |
| 10:00~10:15 | **Opening Session** (개회사: 홍순직 무역위원장, 축사: 김재홍 산업부 차관) |
| 10:15~10:30 | **Group Photo & Break** |
| 10:30~12:30 | **Session I : 거대 경제권 FTA와 무역구제제도** |
| | • 사회자 **김칠수** (WTO 前 사무차장)<br>• 발표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br>**Jan Bohanes** (Advisory Centre on WTO Law, 변호사)<br>**Paul Piquado** (美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br>**Zhou Xiao Yan** (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국장)<br>**Jens Schaps** (EU 집행위 무역구제국장)<br>**Johan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br>• 토론자 **박노형** (고려대 교수), **강용승** (연세대 교수) |
| 12:30~14:30 | **오 찬** (오찬사: 이운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 14:30~16:30 | **Session II : 각 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 |
| | • 사회자 **Johan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br>• 발표자 **Dean Pinkert** (美 ITC 위원)<br>**Victor Manuel Aguilar Pérez** (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br>**Marco Cesar**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국장)<br>**Andrey Zakharov**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무역부 부국장)<br>**Ahmet E. ÇETİNKAYIŞ** (터키 경제부 수입국 부국장)<br>**Dale Seymour**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br>**박진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br>• 토론자 **노소라**(광장 변호사), **이진환**(김앤장 변호사), **안덕근**(서울대 교수) |
| 16:30~16:40 | **폐회식** |
| | **Business Dialogue** |
| 17:20~17:50 | 등록 |
| 17:50~20:00 | Business Dialogue & 만찬 (환영사: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 붙임2 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 현황

[세션 1]

| 사진 | 이름·소속 | 비고 |
|---|---|---|
|  | **김 철 수**<br>前 WTO 사무차장 | 좌장 |
|  | **김 두 식**<br>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 발표자 |
|  | **Jan Bohanes**<br>Advisory Centre on WTO Law(ACWL) 변호사 | 발표자 |
|  | **Paul Piquado**<br>미국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 | 발표자 |
|  | **Jens Schaps**<br>EU 집행위원회 무역구제국장 | 발표자 |
|  | **Zhou Xiao Yan**<br>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국장 | 발표자 |
|  | **Johann Human**<br>WTO 무역규범국장 | 발표자 |
|  | **박 노 형**<br>고려대 교수 | 토론자 |
|  | **강 용 승**<br>연세대 교수 | 토론자 |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세션 2]

| 사진 | 이름·소속 | 비고 |
|---|---|---|
|  | **Johann Human**<br>WTO 무역규범국장 | 좌장 |
|  | **Dean Pinkert**<br>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위원 | 발표자 |
|  | **Victor Manuel Aguilar Pérez**<br>멕시코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 | 발표자 |
|  | **Marco Cesar**<br>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 국장 | 발표자 |
|  | **Andrey Zakharov**<br>유라시아경제위원회 무역부 부국장 | 발표자 |
|  | **Ahmet E. ÇETİNKAYIŞ**<br>터키 경제부 수입국 부국장 | 발표자 |
|  | **Dale Seymour**<br>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 발표자 |
|  | **박 진 규**<br>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 발표자 |
|  | **노 소 라**<br>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토론자 |
|  | **이 진 환**<br>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토론자 |
|  | **안 덕 근**<br>서울대 교수 | 토론자 |

## 참고1 무역구제제도 및 무역위원회 현황

□ **(목적)**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

□ **(기능)** 덤핑, 보조금 등을 조사하고 국내 산업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판정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무역위원회가 덤핑·피해여부 조사·판정 ⇒ 관세인상(기재부)·수입제한(산업부) 건의

○ **(지재권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판정 후 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 **(무역피해조사)**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신청기업의 FTA로 인한 피해 여부 조사·판정 ⇒ 무역조정기업지정(산업부)·컨설팅 및 융자지원(중진공)

* 무역조정지원제도: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산업경쟁력 조사)** 수입증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의 경쟁력 조사·분석

○ **(국제협력)**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및 무역구제 분야 양자·다자 FTA 협상, 한·중 등 양국간 무역구제 정례 협의회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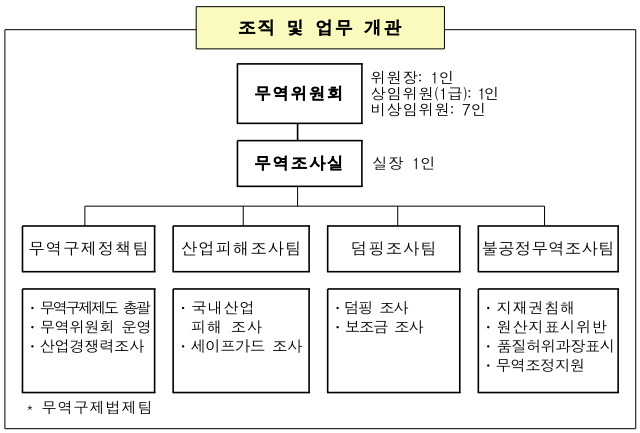
○ **(무역구제 진흥)** 무역구제 홍보·교육,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 무역구제 종합정보 DB 운영 등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조직)** 위원장 1인(홍순직)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기구로 무역조사실(4팀, 47명) 운영

*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임기 3년)
* 위원장 1(비상임),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7(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 **(연혁)** '86년 대외무역법 제37조에 의거, '87.7월 출범(상공부 산하 5인의 위원, 직원 8명의 조직으로 구성)

○ '89.12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산업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판정, 조치결정·건의 등을 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조정

○ '96년.1월 덤핑률 조사 업무를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 '01.3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외무역법상 무역위원회 관련사항을 동법으로 이관

## 참고2 우리나라 무역구제 통계('14.5월)

### □ 반덤핑 조사(신청건수)

○ 연도별 현황

| 구분 | '87~'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계 |
|---|---|---|---|---|---|---|---|---|---|---|---|---|---|---|---|---|---|
| 전체 | 47 | 8 | 6 | 11 | 7 | 5 | 4 | 6 | 8 | 3 | 6 | 6 | 6 | 5 | 5 | 7 | 140 |
| 원심 | 36 | 4 | 1 | 4 | 7 | 3 | 3 | 3 | 6 | 2 | 1 | 2 | 1 | 2 | 3 | 2 | 80 |

* 총 140건 중 89건 조치

○ 품목별 현황

| 구분 | 화학 | 기계/전자 | 종이/목재 | 섬유 | 제철/금속 | 유리/도자 | 기타 | 계 |
|---|---|---|---|---|---|---|---|---|
| 조사신청 | 43 | 11 | 20 | 15 | 21 | 7 | 23 | 140 |
| 조치 중 | 3 | 0 | 3 | 2 | 3 | 2 | 1 | 14 |

○ 국가별 현황

| 구분 | 중국 | 일본 | 미국 | EU | 대만 | 인니 | 인도 | 말련 | 러시아 | 싱가폴 | 태국 | 캐나다 | 기타 | 계 |
|---|---|---|---|---|---|---|---|---|---|---|---|---|---|---|
| 조사신청 | 67 | 44 | 27 | 26 | 15 | 10 | 13 | 13 | 8 | 8 | 10 | 6 | 10 | 257 |
| 조치 중 | 10 | 4 | 2 | 1 | 2 | 2 | 3 | 2 | 1 | 1 | 1 | 2 | - | 31 |

### □ 세이프가드 조사(신청건수)

| 구분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10 | '11 | '12 | '13 | '14 | 계 |
|---|---|---|---|---|---|---|---|---|---|---|---|---|---|---|---|
| 접수 | 25 | 1 | 3 | - | 1 | 1 | - | 1 | 1 | - | - | - | 1 | - | 34 |

* 총 34건의 조사 시청 중 22건 구제조치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수)

| 구 분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계 |
|---|---|---|---|---|---|---|---|---|---|---|---|---|---|---|---|---|---|
| 지재권침해 | 110 | 3 | 2 | 4 | 5 | 4 | 6 | 4 | 3 | 3 | 5 | 13 | 5 | 8 | 7 | 4 | 186 |
| 원산지위반 | 45 | 3 | 6 | 4 | - | 1 | - | - | 1 | 2 | 3 | 2 | 2 | 2 | - | 3 | 74 |
| 허위 과장표시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1 | | 2 |
| 수출입질서저해 | 55 | 3 | 5 | 1 | - | - | - | 1 | - | - | - | - | - | - | - | | 65 |
| 계 | 210 | 9 | 13 | 9 | 5 | 5 | 6 | 5 | 4 | 6 | 8 | 15 | 7 | 10 | 8 | 7 | 327 |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참고3 전 세계 및 대한 수입규제 현황('14.5월)

### □ 전 세계 무역구제 현황(WTO 통계, 조사개시건 기준)

| 구 분 |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계 |
|---|---|---|---|---|---|---|---|---|---|---|---|---|---|---|---|---|---|---|---|---|---|
| 반덤핑 | | 157 | 226 | 246 | 264 | 359 | 296 | 372 | 311 | 234 | 220 | 200 | 203 | 166 | 218 | 217 | 173 | 165 | 209 | 283 | 4519 |
| 상계관세 | | 10 | 7 | 16 | 25 | 41 | 18 | 27 | 9 | 15 | 8 | 6 | 8 | 11 | 16 | 28 | 9 | 25 | 23 | 33 | 335 |
| 세이프가드 | 조사개시 | 2 | 5 | 3 | 10 | 15 | 25 | 12 | 34 | 15 | 14 | 7 | 13 | 8 | 10 | 25 | 20 | 11 | 24 | 18 | 271 |
| | 발동 | - | 1 | 3 | 5 | 5 | 7 | 9 | 14 | 15 | 6 | 6 | 7 | 5 | 6 | 10 | 4 | 11 | 7 | 9 | 130 |

### □ 반덤핑 제소 및 피소 순위

| 구 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비 고 |
|---|---|---|---|---|---|---|
| 제소국(건수) | 인도(702) | 미국(508) | EU(454) | 브라질(334) | 아르헨티나(312) | 한국(121)/11위 |
| 피소국(건수) | 중국(989) | 한국(331) | 미국(255) | 대만(251) | 태국(188) | - |

### □ 국가별 대한 무역구제 조치 현황('14.5월말) : 20개국, 총 146건

| 구 분 | 인도 | 중국 | 미국 | 터키 | 파키스탄 | 인니 | 러시아 | 브라질 | 태국 | 우크라이나 | 아르헨티나 | EU | 기타 | 계 |
|---|---|---|---|---|---|---|---|---|---|---|---|---|---|---|
| 반덤핑 | 25 (6) | 17 | 10 (2) | 3 | 7 | 5 (2) | 1 | 9 (2) | 4 | 1 | 3 (1) | 3 | 23 (5) | 111 (18) |
| 반덤핑/상계관세 | - | - | 4 (1) | - | - | - | - | - | - | - | - | - | - | 4 (1) |
| 상계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이프가드 | 6 (3) | - | - | 7 (1) | - | 5 (3) | 3 (1) | - | 2 (1) | 3 | - | - | 5 (4) | 31 (13) |
| 계 | 30 (8) | 17 | 14 (3) | 10 (1) | 8 (1) | 10 (5) | 4 (1) | 9 (2) | 6 (1) | 4 | 3 (1) | 3 | 28 (9) | 146 (32) |

* ( )은 조사중인 건

○ **(규제형태별)** 반덤핑 111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4건으로 반덤핑이 총 규제의 76%를 차지

○ **(국가별)** 인도, 중국, 미국, 터키, 인니 등 상위 5개국이 총 규제의 57% 이상(84건), 아시아 8개국이 52.7%(77건)으로 높은 비중 차지

| 국가 | 인도 | 중국 | 미국 | 인니 | 터키 | 브라질 | 호주 | 파키스탄 |
|---|---|---|---|---|---|---|---|---|
| 건수 | 31 | 17 | 14 | 10 | 10 | 9 | 9 | 8 |

## 참고4 무역구제제도 개요

### 1 덤핑방지관세제도

□ **(개요)** 덤핑 수입으로 인해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판매량 감소 등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덤핑)** 해외 수출자가 자국시장에서 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자국 시장에서의 가격과 수출 가격과의 차이를 덤핑마진이라 함

○ **(요건)** 덤핑 수입된 제품이 국내 관련 업종의 제품 판매량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이 되거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 지연의 원인이 될 경우

* 직접적 피해: 재고증가, 생산량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이익률 악화 등
* 실질적 지연: 신산업의 경우 계획했던 설비투자, 기술개발의 지연 및 중단 등

□ **(절차)**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자를 상대로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덤핑 존재, 정도 및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서면 신청

○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피해유무 및 피해마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덤핑 기업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 피해마진: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반덤핑관세수준

조사신청 (기업·단체) → 조사 (무역위원회): 조사개시→예비조사→본조사→공청회→최종판정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1년 이내 종결) → 덤핑방지관세부과 (기획재정부)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실적)** 총 139건의 반덤핑 조사 신청 중 89건에 대해 조치('14.12월 기준)

○ 연도별 반덤핑 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87~'99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계 |
|---|---|---|---|---|---|---|---|---|---|---|---|---|---|---|---|
| 전체 | 61 | 11 | 7 | 5 | 4 | 6 | 8 | 3 | 6 | 6 | 6 | 5 | 5 | 6 | 139 (89) |
| 원심 | 41 | 4 | 7 | 3 | 3 | 3 | 6 | 2 | 1 | 2 | 1 | 2 | 3 | 1 | 79 |

* 당해연도 신청 기준, ( ) 안은 조치건수

○ 주요국가에 대한 연도별 반덤핑신청 현황

(단위 : 건)

| 피소국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계 |
|---|---|---|---|---|---|---|---|---|---|---|---|---|---|---|---|
| 중국 | 21 | 6 | 3 | 1 | 2 | 4 | 7 | 1 | 4 | 3 | 4 | 4 | 1 | 5 | 66 |
| 일본 | 21 | 3 | 3 | 3 | 2 | 1 | 2 | - | 2 | 1 | 2 | 1 | 3 | - | 44 |
| EU | 16 | 3 | 4 | - | - | - | 1 | - | 1 | - | - | 1 | - | - | 26 |
| 미국 | 14 | 1 | 2 | - | 1 | 3 | 1 | 1 | 1 | - | 1 | 1 | 1 | - | 27 |

○ 품목별 신청현황

(단위 : 건)

| 구분 | 화학 | 기계/전자 | 종이/목재 | 섬유 | 제철/금속 | 유리/도자 | 기타 | 계 |
|---|---|---|---|---|---|---|---|---|
| 조사신청 | 43 | 11 | 20 | 15 | 20 | 7 | 23 | 139 |
| 조치 중 | 3 | 0 | 3 | 2 | 3 | 2 | 1 | 14 |

○ 우리기업의 반덤핑 피소 현황

(단위 : 건, ( )은 조사중인 건)

| 인도 | 중국 | 미국 | 터키 | 파키스탄 | 인니 | 러시아 | 브라질 | 태국 | 우크라이나 | 아르헨티나 | EU | 기타 | 계 |
|---|---|---|---|---|---|---|---|---|---|---|---|---|---|
| 24 (5) | 17 | 10 (2) | 3 | 8 (1) | 5 (2) | 1 | 9 (2) | 4 | 1 | 3 (1) | 3 | 23 (5) | 111 (18) |

## 〈 덤핑사례 〉

**사례 1 : KC(주)**(대표자 : 박주봉)

○ 제품 : 수산화알루미늄
○ 조치현황 :
신청('02.6.27) → 덤핑방지관세부과 40.33%('03.7.18~'08.7.17, 5년)
○ 주소 : 전남 영암, 연락처 : 061-460-7114

### □ 경 위

○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이 급감하였고 영업적자로 힘들어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을 하였음.

### □ 효 과

○ 우리 회사는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에 힘입어 '00년 대비 매출액이 2.2배 증가하였으며, 시장점유율도 32%에서 75%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영실적이 좋아졌음.

### □ 인터뷰 (CEO 등)

| 구분 | 초 기 | | 조 치 년 | | | | | 최근 2년 | |
|---|---|---|---|---|---|---|---|---|---|
| 연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12년 | 13년 |
| 매출액(억원) | 168 | 71 | 582 | 808 | 969 | 757 | 708 | 1,308 | 1,308 |
| 가동률(%) | 45.6 | 31.2 | 111.7 | 103.3 | 105 | 142.2 | 104 | 106.8 | 112.0 |
| 고용(명) | 162 | 152 | 160 | 172 | 184 | 197 | 205 | 209 | 202 |
| 영업이익률 | △9.2 | △47.7 | 3.2 | 14.6 | 9.3 | 10.0 | 0.8 | 5.4 | 4.3 |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사례 2 : 코린화학**(대표자 : 이무성, 윤병성)

○ 제품 : 염화콜린
○ 조치현황 :
- 원심 신청('03.10.31) → 덤핑방지관세부과('04.10.20~'09.10.19, 5년)
- 1차 재심신청('09.4.20) → 덤핑방지관세부과('10.1.29~'13.1.28, 3년)
- 2차 재심신청('12.7.27) → 덤핑방지관세부과('13.8.22~'16.8.21, 3년)
○ 주소 : 울산 울주군, 연락처 : 052-238-1107

### □ 경 위

○ 미국, 인도,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악화되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 신청을 하였음

### □ 효 과

○ 우리 회사는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에 힘입어 '03년 대비 '12년 매출액이 1.8배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좋아졌음

| 구분 | 초 기 | | 조 치 년 | | | | | 최근 2년 | |
|---|---|---|---|---|---|---|---|---|---|
| 연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11년 | 12년 |
| 매출액(억원) | 66 | 62 | 51 | 67 | 65 | - | - | 110 | 112 |
| 가동률(%) | 97.7 | 93.3 | 70.1 | 84.0 | 80.8 | - | - | 91.6 | 88.0 |
| 고용(명) | 19 | 16 | 13 | 11 | 12 | - | - | 17 | 19 |
| 영업이익률 | △7.9 | △2.4 | △1.3 | 8.2 | 4.5 | - | - | 6.1 | 8.2 |

○ 생산설비 확충 및 신제품 개발 등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해 자구노력을 강구할 예정임

## 2 세이프가드제도

□ **(개요)** 특정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동종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 인상과 수입수량 제한 등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고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

* '95년 WTO출범 이후 대두유, 유제품, 자전거부품, 마늘 4개 품목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조사 실시 후 유제품,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실시

○ **(요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 발생 및 발생 우려의 원인이 될 경우

* 수입급증은 수입의 실제 증가(절대적 증가) 또는 수입은 실제 증가하지 않더라도 규모가 작아지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상대적 증가)를 의미

*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

□ **(절차)**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 된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산업피해 유무를 판정하고 조치를 건의하며, 주무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시행

| 조사신청 (이해관계인 및 주무부장관) | → | 조사 (무역위원회) 조사개시결정 → 조사 및 판정 → 조치건의 (신청접수 후 150일 이내 산업피해유무를 판정) | → | 조치시행 (주무부장관) |
|---|---|---|---|---|

□ **(실적)** 총 24건의 조사중 22건에 대해 조치('14.4월 기준)

(단위 : 건)

| 구분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10 | '11 | '12 | '13 | '14 | 계 |
|---|---|---|---|---|---|---|---|---|---|---|---|---|---|---|---|
| 접수 | 25 | 1 | 3 | - | 1 | 1 | - | 1 | 1 | - | - | - | 1 | - | 34 |
| 신청철회 | ( 7 ) | | | | | | | | ( 1 ) | | | | ( 1 ) | - | ( 8 ) |
| 조사불개시 | ( 1 ) | | | | | | | | | | | | | - | ( 2 ) |
| 긍정판정 | ( 16 ) | ( 1 ) | ( 2 ) | | ( 1 ) | ( 1 ) | | ( 1 ) | | | | | | - | ( 22 ) |
| 부정판정 | ( 1 ) | | ( 1 ) | | | | | | | | | | | - | ( 2 ) |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3 상계관세제도

□ **(개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품이 수출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덤핑은 기업의 행위인 반면 보조금의 지급은 정부·공공기관의 행위

○ 보조금이란 자국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있고, 재정적 기여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이 있으며 특정성이 존재할 경우로 정의(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 수입물품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존재한다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은 덤핑방지관세제도와 동일

□ **(절차)**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

○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피해유무 및 피해마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상계관세를 부과

| 조사신청 (기업·단체) | → | 조사 (무역위원회) 조사개시→예비조사→본조사→공청회→최종판정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1년 이내 종결) | → | 상계관세부과 (기획재정부) |
|---|---|---|---|---|

## 〈 상계관세사례 〉

### 피소사례 1 :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상계관세 조치

○ 제품 : 세탁기
○ 대상업체 :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 조치현황 : 미국 월풀社 제소('11.12.30.) → 미 상무부·무역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판정('13.1.23.)
* 삼성 9.29%, LG 13.02%, 대우 82.41%
** 삼성 0.01%, 엘지 1.85%, 대우 72.30%

### □ 경 위

○ 한국의 가전업체(삼성, LG, 대우)가 생산 판매한 세탁기가 미국시장의 약 43%('10년 기준)를 점유하고, 연간 8~10억 달러의 매출 기록

- 미국의 월풀社는 한국산 세탁기가 정부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저가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에 제소, 미 상무부 무역위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판정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 효 과

○ 조치 이후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20%대('13년 기준)로 급감했으며, 냉장고와 에어컨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반면, 중국산 세탁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상승('10년 7% → '13년 52%)하여 한국에 대한 조치의 반사이익을 누림

※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 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판단, WTO에 제소('13.8.29.)하여 '14년 5월 현재 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피소사례 2 : 일본의 한국산 반도체 상계관세 조치

○ 제품 : 반도체 D램
○ 대상업체 : 하이닉스반도체
○ 조치현황 : 일본 엘피다메모리 등 2개社 제소('04.6.) → 일 재무·경제산업성의 상계관세 조치(27.2%) 판정('06.1.) → 한국 정부의 WTO 제소('06.3.) → WTO 승소 판정('07.11.) → 하이닉스반도체의 상황변동 재심 신청('08.9.) → 일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09.4.)

### □ 경 위

○ 반도체 시장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이 채무 재조정 조치 단행('01~'02년)

- 일 엘피다메모리 등 2개社는 하이닉스가 채권단(정부계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것이 수출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일 정부에 제소, 일 재무 경제산업성은 27.2%의 상계관세 조치 판정

- WTO는 하이닉스의 채무 재조정 조치는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를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

### □ 효 과

○ 일본의 조치 이후 하이닉스 D램의 일본 수출은 급락하여, 일본시장 점유율은 약 4% 하락, 연간 약 1.7억불의 매출 손실 발생

- WTO 승소 판결 이후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EU('03.7~'08.4.), 미국('03.8.~'08.10.)도 재심을 통해 부과조치 철폐

##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개념)**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허위·과장 표시 등 경쟁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조사·판정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하는 제도

<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

| | |
|---|---|
| 지식재산권 침 해 | ○ 대한민국 법령·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등을<br>-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br>- 수입하거나,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br>-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
| 원산지표시 위 반 |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br>○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br>○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br>-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 품질 허위·과장 표시 | ○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br>-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 **(절차)** 공익적 고발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신고포상금제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신속한 제재를 위해 조사신청자 및 중요정보 제공자에 대해여는 과징금부과액의 10% 이내의 포상금 지급

○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등 제재 조치

조사신청 (서면신청) → 조사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 조사 → 심의 및 의결 (조사개시 후 6개월내 판정) → 제재조치 (무역위원회)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실적)** 총 321건의 조사신청, 107건 제재조치('14.4월 기준)

(단위 : 건)

| 구 분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계 |
|---|---|---|---|---|---|---|---|---|---|---|---|---|---|---|---|---|---|---|---|---|---|
| 지재권 침해 | 105 | 2 | - | - | 3 | 3 | 2 | 4 | 5 | 4 | 6 | 4 | 3 | 3 | 5 | 13 | 5 | 8 | 7 | 1 | 183 |
| 원산지 위반 | 39 | 2 | - | 1 | 3 | 3 | 6 | 4 | - | 1 | - | - | 1 | 2 | 3 | 2 | 2 | 2 | - | | 71 |
| 허위 과장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1 | | 2 |
| 수출입 질서저해 | 41 | - | 2 | 8 | 4 | 3 | 5 | 1 | - | - | - | 1 | - | - | - | - | - | - | - | | 65 |
| 계 | 185 | 4 | 2 | 9 | 10 | 9 | 13 | 9 | 5 | 5 | 6 | 5 | 4 | 6 | 8 | 15 | 7 | 10 | 8 | 1 | 321 |

○ 지재권 유형별 신청현황

(단위 : 건)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 영업비밀 | **계** |
|---|---|---|---|---|---|---|
| 40 | 4 | 107 | 14 | 12 | 6 | **183**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과

(단위 : 건)

| 제재 | 무혐의 | 관련기관 이첩 | 조사종결 | 조사중 | 계 |
|---|---|---|---|---|---|
| 107 | 90 | 40 | 82 | 3 | **322** |

**사례 1 : 모피의류 원산지표시위반 조사**

○ 제품 : 모피의류
○ 조치현황 : 조사개시('12.2.1.)→불공정무역행위 해당 판정('12.7.25.)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섬유센터, 연락처 : 02-528-0112

**□ 경 위**

○ 한국의류산업협회 단속팀장이 상갓집 조문중 문상객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구체적인 위반실태와 불공정무역행위 업체 등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무역위에 조사 신청

- 판정결과: 과징금 17,241,650원 부과, 해당 위반물품 재고에 대한 원산지 정정표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 효 과**

○ 행정조치 후 해당업체는 물론 국내 모피의류 전체업계와 주요 3대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도 큰 반향

○ 관련업계에서는 재발방지와 위반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를 계기로 동 제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가 현저히 개선

**□ 인터뷰 (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부장)**

○ 섬유패션계의 지재권 침해행위는 갈수록 조직화, 대량화, 기업화, 지능화, 국제화, 신속화, 정밀화, 분업화되고 있는 추세

- 향후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통한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관련업계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사례 2 :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조사**

○ 제품 : LED패키지
○ 조치현황 : 조사개시('11.9.2.)→ 무혐의 판정('12.4.25.)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연락처 : 02-3777-1114

**□ 경 위**

○ 2011.7.28. LED 등 조명장치 제조판매 업체인 독일 오스람 아게, 오스람 옵토 등 2개사가 LG이노텍(주)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 4건을 침해한 LED 패키지제품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 조명시장의 무게중심이 형광등과 백열등에서 LED로 이동하며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면서, 당시 국내 LED산업이 급성장하였고 이 분야를 둘러싼 특허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본격화

○ 판정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효 과**

○ 불공정무역행위 무혐의 판정 이후 오스람과 LG 이노텍은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화해

**□ 인터뷰**

○ *없음(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설명으로 대체)*

## 5 무역조정지원제도

□ **(개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체결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지원

○ FTA 이행으로 체결상대국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10% 이상의 매출액이나 생산액의 감소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기업이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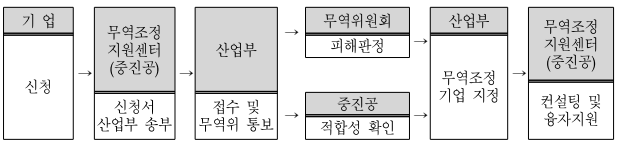
**< 컨설팅 자금 및 융자 지원내용 >**

○ 컨설팅 자금: 소요비용의 80% 지원(기업당 4천만원 한도)
○ 융자: 기업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된 금리로 지원(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 **(절차)**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

○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여부를 결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실적)**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07.4월) 이래 54건 조사, 41건 피해판정 ('14.4월 기준)

<무역조정 지원 기업 피해판정 현황('14.4월말 기준, 단위 : 개사)>

|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누계 |
|---|---|---|---|---|---|---|---|---|
| 신청 건수 | 3 | 3 | 2 | - | 13 | 31 | 2 | 54 |
| 피해 판정 | 2 | 3 | 2 | - | 8 | 24 | 2 | 41 |
| 피해 없음 | 1 | - | - | - | 2 | 4 | - | 7 |
| 철회·반송 | - | - | - | - | 3 | 3 | - | 6 |

○ **(품목별)** 총 41건의 피해 판정 중 돈육가공기업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핸드백, 복분자주, 등산화 등 다양한 품목을 판정

* 판정품목: 머루주, 시계, 염장고등어, 복분자주, 골프웨어, 도료경화제, 티셔츠, 탈모방지샴푸, 초콜릿, 방적기계부품, 와인, 등산화, 스포츠용신발, 에틸렌글리콜 등

○ **(협정별)** 신청건에 대한 관련 FTA는 한-EU FTA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ASEAN 12건, 한-칠레 FTA 6건, 한-EFTA 4건임

* 한-EU(30), 한-ASEAN(12), 한-칠레(6), 한-EFTA(4), 한-미(1), 한-싱가폴(1)

## 〈 무역조정지원 사례〉

**사례 1 : 한국와인** (대표자 : 하형태)

○ 제품 : 와인
○ 조치현황 : 신청('13.3.27) → 무역조정지원 판정('13.4.24)
○ 주소 : 경북 영천, 연락처 : 00-000-0000

### □ 경 위

○ 한국의 보르도라 불리는 와인기업 한국와인은 2012년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와인의 수입급증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60%가량 급감

- 나빠진 경영실적 탓에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았으나 문턱은 높기만 했다. 그러던중 중진공의 권유로 FTA피해 구제제도인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신청

### □ 효 과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되어 중진공으로부터 1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급한불인 상거래 채무를 정리하고 중단됐던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

○ 오디 와인 제품개발 등 생산품의 다변화, 판로개척등 1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30%가 신장

### □ 인터뷰 (CEO 등)

○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회사가 회생되었으며, 앞으로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에 전력을 다하여, 14년 매출액을 전년대비 100%로 신장할 예정

- 다양한 제품으로 매출을 늘리고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다짐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사례 2 : (주)안동간고등어** (대표자 : 김재문)

○ 제품 : 안동간고등어
○ 조치현황 : 신청('09.9.10) → 무역조정지원 판정('09.10.28)
○ 주소 : 경북 안동, 연락처 : 00-000-0000

### □ 경 위

○ 1999년 창업한 안동간고등어는 그간 고속성장세를 이어 왔으나, 2005년 한·유럽연합 fta가 체결되면서

- 10%관세가 붙던 노르웨이산 고등어살이 500톤까지 무관세로 바뀌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2008년 매출이 2006년보다 60%이상 감소
- 심각한 경영위기중 중진공의 권유로 FTA피해 구제제도인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신청

### □ 효 과

○ 무역조정지원으로 최상의 원재료 확보와 컨베이어세척기등 위생과 청결등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동종업계 최초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하고

○ 공동브랜드인 '청어당'을 개발해 그간 대형할인점 판매전략에서 학교급식등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2012년 중국에 공장을 세워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위기를 급복

### □ 인터뷰 (CEO 등)

○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회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였으며, 단순한 생선가공품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한류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힘